


보 도 자 료			
	보도일시	2018년 7월 17일 12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[7.18(수) 조간]	
	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	이상일 과장 / 노경우 사무관 044-201-3855 / 3858
		환 경 부 교통환경과	이형섭 과장 / 김경미 사무관 044-201-6920 / 6929
		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	김용달 처장 / 김호경 차장 054-459-7510 / 7517
		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	이준기 처장 / 이광욱 팀장 032-590-3673 / 5187
		배포일시	2018. 7. 17. / 총 12매

부정검사 의심 전국 148개 민간검사소 점검... 44곳 적발  
거짓기록·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46건 행정처분...제재 강화방안 추진키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환경부(장관 김은경)는 전국 17백 곳의 지정정비사업자(이하 '민간자동차검사소')\*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·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.

\* 지정정비사업자: 자동차관리법 제45조(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)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

-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했다.
-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106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.
-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\*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\*\*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.

\*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: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(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)

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: 자동차의 제작·운행·폐차 단계까지 전주기 배출  
가스 정보 통합 관리(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)

\*\* 부정검사 의심 사항: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은 곳, 검사차량 접수 후  
삭제 이력이 많은 곳,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,  
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'0'이 많은 곳 등

<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>

구분	점검권역	참여 기관명	점검결과		점검기간*
			점검	적발	
총계			148	44	
제1팀	서울, 인천, 경기	한강감시단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교통환경연구소	46	7	6.22~7.6
제2팀	대전, 강원, 충북	원주지방환경청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10	2	6.25~6.27
제3팀	충남	금강감시단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17	14	6.25~6.29
제4팀	부산, 울산, 대구, 경남·북	낙동강감시단, 대구지방환경청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46	9	6.21~7.6
제5팀	광주, 전남·북	영산강감시단, 새만금청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29	12	6.25~7.5

\* 점검기간은 권역별로 점검대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였음

□ 점검대상 150곳 중 14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※ 2곳은 태풍, 섬 지역 소재로 점검을 하지 못함. 추후 점검 예정

○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며,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.

○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(46%), 불법 튜닝차량  
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(33%), 영상촬영 부정적  
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(13%) 등이었다.

< 세부 위반사항 >

위 반 내 용		건수(건)	비율(%)
합 계		46	100
검사기기관리 미흡	검사기기교정, 누출검사 등	21	46
검사항목일부생략	불법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	15	33
거짓/미기록	영상촬영부적정(촬영상태, 카메라위치 등)	6	13
	검사표 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		
업무범위초과	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	3	6
기타	지정폐기물보관기준 위반	1	2

- 적발사항은 검사소 업무정지(44건), 검사원 직무정지(41건)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(1건)를 부과할 예정이다.
-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,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.

< 적발 및 조치 예정 >

점검 검사소	위반 검사소	위반 건수	처분조치*(예정)			
			계	행정처분		과태료
				업무정지	직무정지	
148	44	46	86	44	41	1

\*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(검사소)와 직무정지(검사원)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

-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점검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'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매뉴얼'을 배포하고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.
- 오는 7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, 환경부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는 “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,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,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1. 합동점검 결과

- 2. 질의응답
- 3.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
- 4. 참고자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노경우 사무관(☎ 044-201-38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□ 목 적**

- 자동차 민간 검사기관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부정검사 만연사례를 적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함

**□ 점검개요**

- 기간 : 2018. 6. 21 ~ 7. 6(약 2주)
- 내용 : 자동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(자관법, 대기법)
- 기관 : 국토교통부, 환경부,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  
※ (지원)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 등
- 점검건수 : 150개소(17백개소 中)\_부정검사 의심 기관  
※ 선정기준 :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 합격률, 시스템에 배출허용기준 잘못 입력체, 배출가스 결과 값이 '0'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
- 권역별 점검팀 구성

구분	점검권역	참여 기관명	점검결과		점검기간*
			점검 검사소	위반 검사소	
총계			148	44	
제1팀	서울, 인천, 경기	한강감시단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교통환경연구소	46	7	6.22~7.6
제2팀	대전, 강원, 충북	원주지방환경청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10	2	6.25~6.27
제3팀	충남	금강감시단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17	14	6.25~6.29
제4팀	부산, 울산, 대구, 경남·북	낙동강감시단, 대구지방환경청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46	9	6.21~7.6
제5팀	광주, 전남·북	영산강감시단, 새만금청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	29	12	6.25~7.5

※ 2곳은 태풍, 섬 지역 소재로 점검을 하지 못함. 추후 점검 예정

**□ 향후일정**

- 점검결과 공유 세미나(7.19), 하반기 합동점검(12월말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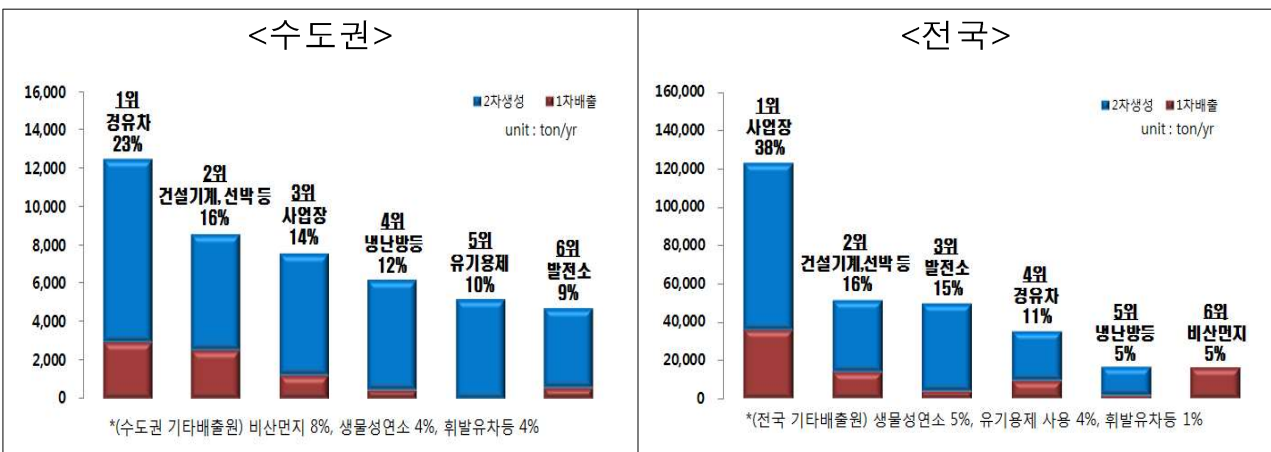
붙임 : 위반 검사소 현황

1.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?

- ☞ 최근 언론에서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불법구조변경 차량 목인, 검사결과 조작,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보도된바 있음
- ☞ 또한,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
- ☞ 이에 전체 민간자동차검사소 17백곳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50 곳을 점검대상으로 선별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 실시

2.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?

- ☞ 전국의 경우 배출기여도 11%를 차지하며,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배출기여도 23%로 1순위 배출원임



### 3.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?

- ☞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(상세사항 붙임 3)

### 4.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?

- ☞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
\* 자동차관리법 제84조, 시행령 별표 2
- ☞ 검사 명령 불응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
\*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항

### 5. 자동차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가 만연한 이유?

- ☞ 민간 사업자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목인,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,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·편법검사 만연
- ☞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,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하여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 발생

**□ 검사종류**

검사 종류	내 용	관련 법령
정기검사	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	대 기 환 경 보 전 법 제62조
튜닝검사	자동차를 구조변경 한 경우에 실시	자 동 차 관 리 법 제43조
임시검사	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	
종합검사	정기검사, 정밀검사*, 특정경유자동차검사**를 통합하여 실시	자 동 차 관 리 법 제43조의2

\*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)

\*\*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(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)

**□ 검사주기**

○ 정기검사

구 분		검 사유 효 기 간
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		2년*
사업용 승용자동차		1년*
경형·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		1년
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	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	1년
	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	6월
그 밖의 자동차 (사업용 대형승합)	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	1년
	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	6월

\*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 사유 효 기 간 은 비사업용 승용 4년, 사업용 승용 2년

○ 종합검사

검사 대상	적용 차령(車齡)	검 사 유 효 기 간	
승용자동차	비사업용	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	2년
	사업용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	1년
경형·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	비사업용	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	1년
	사업용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	1년
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	6개 월	
그 밖의 자동차 (사업용 대형승합)	비사업용	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	차령 5년까지는 1년, 이후부터는 6개월
	사업용	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	차령 5년까지는 1년, 이후부터는 6개월



참고 1

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(정기·정밀·특정) 비교

구 분	정기검사		종합검사				
			배출가스 정밀검사		특정경유차검사*		
근거법령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	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의2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3조	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의2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」 제25조		
주무부처	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) 환경부(교통환경과, 시·도)		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) 환경부(교통환경과, 시·도)		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) 환경부(교통환경과, 시·도)		
검사기관	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		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		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		
시행지역	전 국		대기환경규제지역*, 인구 50만이상 지역 (서울, 경기 15개시, 인천, 대구, 부산, 대전, 광주, 울산, 김해, 전주, 창원, 천안, 청주, 포항)		대기관리권역* (서울, 경기 28개시, 인천)		
시행년도	1962년		2002년부터 차등 적용		2006년		
검사대상	전 차 종		전 차 종		경유자동차		
검사주기	차 종	최초	검사주기	최초	검사주기	최초	검사주기
	승 용	비사업용	4년	2년	4년경과	2년	2년
		사업용	2년	1년	2년경과	1년	5년경과 (3.5톤 미만)
	승 합 화 물	소 형	1년	1년	3년경과(자가용) 2년경과(사업용)	6월~1년	2년경과 (3.5톤 이상)
중대형		2년	1년	6월~1년			
검사방법 및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동·등화·조향장치 등 안전검사</li> <li>배출가스(무부하검사), 소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휘발유 : CO, HC, 공기과잉률</li> <li>경 유 : 매연</li> </ul> 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운행상태의 배출가스 부하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휘발유 : CO, HC, NOx</li> <li>경 유 : 매연, 엔진출력·회전수</li> </ul> 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밀검사와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</li> <li>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</li> </ul> </li> </ul>		
검사기간	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						
재검사	검사기간내 부적합 :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, 검사기간외 부적합 :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 (단, 특정경유자동차 : 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엔진개조, 폐차 등 조치기간(30일 이내))						
검사비용	경형 17,000원, 소형 23,000원, 중형 26,500원, 대형 29,000원		경형 48,000원, 소형 54,000원, 중형 56,000원, 대형 65,000원		무부하(대기법 명시) 34,000원 부 하(5.5톤 이하) 45,000원 부 하(5.5톤 초과) 49,000원		
未이행 처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간경과 : 30일까지 2만원, 3일 만원, 30만원 이하 과태료</li> <li>명령불응 : 1,000만원 이하 벌금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간경과 : 30일까지 2만원, 3일 만원, 30만원 이하 과태료</li> <li>명령불응 : 1,000만원 이하 벌금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감장치 미부착 : 300만원 이하 벌금</li> </ul>		

**참고 2**

**행정처분 기준\_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**

[별표 4]

행정처분의 기준(제22조 관련)

II. 개별기준

위 반 내 용	관계 법령	처 분 내 용	
		종합검사대행자·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	기술인력
바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·기구로 검사를 하거나,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30일 3차: 직무정지 90일
사.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6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30일 3차: 직무정지 60일
자. 법 제43조제6항(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6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30일 3차: 직무정지 60일
카.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지정취소	
타.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직무정지 60일 3차: 직무정지 90일
파. 법 제45조제7항(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90일 3차: 지정취소	
하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